

2026 관광플러스테크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(이하 ‘공사’)는 기술 기업의 관광분야 진출 및 융복합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「2026 관광플러스테크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월 5일

I. 사업개요

1. 추진목적

- 관광(연계)분야 확장 가능 기술기업 발굴 및 융복합 관광 활성화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중 관광산업 연계 및 기술 적용 가능 기업을 발굴하여, 관광분야로 사업 확장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화 지원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

중앙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(예 : 중기부 TIPS (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) 등)

2. 지원대상 (총 7개사 선정 예정)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중 자사의 핵심기술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관광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

3. 지원기간/금액 : 1개년 기준 2억원(최대 2개년 4억원 한도)

- ※ 1차년도 성과평가('26년 11월)를 통하여 ‘우수’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
2차년도 지속 지원여부 결정

4. 사업내용

- (1차년도) BM 개발, BM·수요 검증, 실증화(PoC), 1차년도 성과평가
- (2차년도) 관광(연계) 적용 확대, B2B 파트너·수요처 매칭, 2차년도 성과평가

5. 주요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
관광 사업화자금	관광사업화 관련 과제 이행 및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 지원
관광플러스테크 프로그램	기업진단, BM 컨설팅, 수요검증, 관광실증화, 오픈이노베이션 등

6. 모집분야 : 아래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 자유 제안(택1)

AI 활용 분야	스마트모빌리티·항공·교통 분야	핀테크 등 소비 분야	지속가능·기후테크 관광 분야
AI 등 기술을 활용해 관광산업의 생산성과 고객 경험 혁신 서비스	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모빌리티 및 항공, 교통 연계형 서비스	관광 결제, 정산 등 소비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화를 지원하는 기술	친환경·ESG·바이오·로컬상생 등 지속가능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서비스

7. 사업 추진절차 ※1차년도 성과평가 결과 ‘우수’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2차년도 지원

		BM 개발 및 실증화 지원													
1 차 년 도	① 기업 모집·선정 1월~3월	➤	② 협약 체결 4월	➤	③ 사업비 교부 4월	➤	④ BM개발· 수요검증 4~6월	➤	⑤ 중간점검, 파트너 매칭 7~8월	➤	⑥ 실증화 지원 7~10월	➤	⑦ 사업비 정산 11월	➤	⑧ 성과 평가 11월
		관광사업화 및 수요처 확대 지원													
2 차 년 도	① 기업 모집·선정 1월~3월	➤	② 협약 체결 4월	➤	③ 사업비 교부 4월	➤	④ 수요처 확장지원 4~5월	➤	⑤ 중간 점검 6월	➤	⑥ 투자유치 지원 7월	➤	⑦ 사업비 정산 11월	➤	⑧ 성과 평가 11월

II. 세부 지원내용 (1차년도 2026년 기준)

※ 아래의 내용은 1차년도(2026년) 기준이며, 2차년도(2027년) 지원내용은 기업별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 예정

1.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12월 예정

2. 지원내용

가. 사업화자금 지원 : 2억원

- (재무지원) 관광 사업화자금 지원

* 관광사업화 관련 과제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 내에서 본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편성

구 분	사업비 집행기간	사업비	
		공사지원금	기업부담금
2026년	협약체결일~2026.10.31.	200백만원	40백만원
합 계		200백만원	40백만원

나. 관광플러스테크 프로그램 제공

- (기업진단) 선정기업 종합 진단결과 기반 관광사업화 지원 계획 수립
- (BM 컨설팅) 기업 제품·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(BM) 수립 지원
- (수요검증) 비즈니스 모델(BM) 최적화를 위한 수요검증단 기획·운영
- (관광실증화) 참여기업 관광 실증화(PoC) 실행 지원·관리
- (성과관리)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 및 성과보고회 개최

III. 선정기업 의무사항

- (총괄책임자 지정) 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(대표자 또는 C-Level 이상의 참여자) 참여율을 최소 50% 이상으로 설정 필요
 - * 대표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더라도 인건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
- (관광사업자 등록) 1차년도 협약기간 내 관광진흥법상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·허가·신고·지정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의 업종 등록
- (협약 과제 이행) 협약과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계획 수행 및 목표 및 목표 달성
- (관광플러스테크 프로그램 참여) 공사 및 전담운영사가 제공하는 관광사업화 관련 기업진단, BM 컨설팅, 오픈이노베이션 등 필수 프로그램의 성실한 참여
- (자료제출 의무) 선정기업은 사업 수행 중 추진 실적·성과(매출, 고용, 투자유치, 사업 추진 등)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(정기·비정기)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, 협약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실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
- (최종 결과보고) 본 사업으로 추진된 실적 등을 공사에 정기·비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, 1차년도 성과평가 및 2차년도 지원 여부 판정*을 위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(증빙 포함)

* 2차년도 지원기준

※ 2차년도 지원기준 (다음의 기준 모두 충족 시, 지속 지원)

- ① 1차년도 성과평가 결과 **우수(81점~100점)** 이상 판정
- ② **관광 사업 실증화* 실적 1건 이상** 달성
 - 관광 사업화 관련 제품·서비스 출시(시제품 포함)
 - 관광 사업화 관련 제품·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계약 체결
 - 관광 사업화 관련 매출 발생
 - 관광 사업화 관련 정부부처 등의 지원사업(오픈이노베이션, 실증화 등)에 참여하여 결과물 보유

IV. 신청 자격

1.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*법인사업자에 한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* 수행 중이거나 완료 실적을 보유한 기업
 -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 등록된 과제의 경우 인정
 - * 자격검증 기간 내 NTIS 내 조회·확인 불가 시, 부적격 판정 예정
 - * 국가연구개발 중도포기 시, 향후 공사 관광기업지원사업 선발시 불이익있을 수 있음

2. 신청 제외대상
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되는 자
2. 본 사업의 운영 지침 제4조(다른 법률 및 지침과의 관계)에 의거,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3. 공고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
4.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
예외	-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조건	- 세금분납계획(체납처분유예신청)에 따라 성실 납부 중인 자

5.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

예외	-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조건	-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,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-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

6. 공고마감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및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 한국관광공사 퇴직자
7. 관리기관의 관광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이거나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8. 당해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거나 그 외 사업의 내용, 지원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이라고 판단하는 지원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*협약체결 이후에도 중복수혜 확인 시,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협약취소도 가능함.

9.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기업 지원사업 당해연도 중복수혜자 및 본 사업의 기수혜자

중복	- (2026-2027) 관광벤처사업(예비, 초기, 성장) 선정기업
수혜	- (2026-2027)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수혜(선정)기업
범위	- (2026-2027)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선정기업 *2차년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2027년도 중복수혜 범위에 해당됨 - (2020-2025) 관광플러스테크(팁스) 사업 선정기업

10. 기 출원·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·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
11.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업종(일반유희주점업, 무도유희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)을 영위하는 자

V. 사업 신청안내

1. 신청기간 : '26.1.5.[월]~'26.1.26.[월] 11:00까지 / 22일간

2. 신청방법 : 투어라즈(<https://touraz.kr/>) 통해서 접수

3. 제출서류 : 아래의 서류를 PDF파일로 투어라즈 제출 요청

구분	제출서류	비고
▶ 사업 신청 시 (1.5~.1.26 11:00까지)		
사업수행	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* 한글 및 PDF파일 두 개 압축파일로 묶어서 함께 제출	서식1
자격검증	중소기업 확인서	
	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행확인서(협약서, 선정확인서 등)	
	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	
	국가연구개발사업 소속기관제재확인서	NTIS
필수항목	사업자등록증명	홈택스
	법인등기부등본	
	* 말소사항 포함, 전체 페이지 제출	
	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본	홈택스
	대표자 신분증 사본	
	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후 제출	
	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서식2
	* 대표자 포함 참여인력 전원 제출 필요	
	사업 신청 서약서	서식3
	(해당 시) 공동(각자)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	서식4
실적증명	(매출)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(2023-2025, 3개년)	
	(투자) 주주명부	자유양식
	(고용)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	
	* 취득/상실일 포함 제출	
가점	중기부 TIPS 선정 공문	
	중기부 TIPS 평가 결과 '성공' 판정 공문	
	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	
▶ 서류평가 합격 시 (추후 별도 안내)		
발표평가	발표 자료(PDF)	서식5
▶ 협약 체결 시 (추후 별도 안내)		

* 외부기관 등 발급서류의 경우, 공고일 이후(공고일 포함) 발급분으로 제출

VI. 선정절차 및 평가방안

1. 선정절차(안) *예정 변동될 수 있음



2. 평가방법

- (평가절차) 자격검증→서류평가(2배수)→발표평가(1배수)→합격발표
- (자격검증) 공모 신청기업의 기본적인 자격(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, 중소기업 여부, 제한사항 등) 확인 및 점검
- (서류·발표평가)
 - (서류평가) 제출 서류 기반의 서면 평가 실시
 - (발표평가)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평가 실시
 - *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
 - * 평가일정 및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
 - (평가위원 구성) 관광, 기술,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7인
 - (집계방법) 평가항목별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(단, 단계별 합산점수 60점 이하의 경우 선정 제외)
 - (동점자 순위결정) 동점자 발생 시, 다음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결정
 - * (서류평가) ②기술력>①기업역량>⑥파급효과>⑤사업화전략>④아이템>③이해도
 - * (발표평가) ⑤사업화전략>④아이템>⑥파급효과>①기업역량>②기술력>③이해도
 - (기타사항) 전형별 선정기업 중도 포기 또는 사업 제한 사항 확인 시, 차순위 후보기업에 기회 부여 예정

3. 평가항목 및 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서류	발표
①기업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의 비전, 사업수행역량, 재무건전성 등 대표자 보유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인력 전문성 	20	15
②기술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, 난이도, 우수성, 확장가능성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현황 및 실적의 우수성 	25	10
③관광산업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광(연계)산업 내 문제정의, 시장조사, 목표고객 분석 보유기술의 관광(연계)산업 적용 필요성 	10	10
④관광 사업아이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아이템 우수성 및 차별성, 시장성(수요) 사업아이템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 방안 	10	20
⑤관광사업화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광사업화 과제·목표 및 전략 수립의 우수성 관광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산 및 출시, 판로개척, 판매,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효과성 	15	25
⑥관광산업 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광 산업 연관성 및 기여도, 융복합 관광 활성화 효과성 관광 산업과의 확장성 및 지속가능성 	20	20
(평가) 소계		100	100
가점 (최대 4점)	• 중기부 TIPS를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경우	1	-
	• 중기부 TIPS 성과평가 결과 '성공'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	2	-
	•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	1	-
(평가 + 가점) 합계		104	100

4. 평가 배점기준

평가기준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
25점 만점	25~21	20~16	15~11	10~6	5~1
20점 만점	20~17	16~13	12~9	8~5	4~1
15점 만점	15~13	12~10	9~5	6~4	3~1
10점 만점	10~9	8~7	6~5	4~3	2~1

VII.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

※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과 공사의 본 사업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1. 관련 법령 및 지침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(기획재정부)
-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(문화체육관광부)
- 「관광플러스테크」 사업 운영 지침 (한국관광공사)

2. 사업 신청 및 선정

- 신청기간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, 동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최종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및 축소할 수 없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공사 관광기업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(선정·지원제외)
 - * 제3자와 합의 하에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를 신청자만 달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,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취소 대상

1. 본 사업의 참여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
2.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
3.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 또는 도용하여 제출한 경우
4.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5. 협약 체결 전 사업수행을 자진 포기하는 경우
6. 경영악화, 사업전환,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7. 기타 사업관리기관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- 본 사업 선정 이후,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,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(협약)취소,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

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본 공모에 최종 선정되더라도,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

3. 협약 체결

- (현장실사)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,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,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될 수 있음
 - * 제출된 계획서 및 산출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
- (협약해지)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, 참여기업에게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

4. 사업비 지급 및 정산

- (사업화자금)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*할 예정이며, 사업비(국고보조금, 자부담금)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 - * 공사는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음
- (집행·정산)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, 예산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 함
 - *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,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
- (회계검토)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기업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금집행 등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검토 받아야하며,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음

5. 성희롱·성폭력 방지 관련 의무고지

- (보조금 교부 취소)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1항1호바·사·아목에 의거, 상위보조사업자(공사)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,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

- (성희롱·성폭력 방지의무) 동 지침 제10조1항4호가목에 의거, 간접보조사업자(참여기업 등)는 사업 수행 중의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
- (예방교육 실시의무) 동 지침 제10조1항4호나목에 의거, 간접보조사업자(참여기업)는 사업 수행 중의 사업 참여자(프리랜서 포함)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
VIII. 문의처

- 관광플러스테크 공모 운영 사무국
 - 운영시간: 평일 오전 10시~17시 유선 문의 가능, 그 외 시간은 이메일로 문의 바람

연락처	이메일
02-587-6275	oi@markncompany.co.kr